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6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취업진로본부), 02-970-9002

제정 2013. 1. 21. 개정 2015. 6. 5. 개정 2016. 5. 4. 개정 2016. 9. 20. 개정 2017. 9. 14. 개정 2018. 7. 31.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11. 29. 개정 2022. 2. 2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취업진로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4., 2020.8.14., 2022.2.21.〉
- 제2조(기능) 취업진로본부는 취업·진로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등 기타 필요한 지원활동을 관장한다.<개정 2016. 5. 4, 2017.9.14., 2020.8.14., 2022.2.2 1>
- **제3조(조직)** ①취업진로본부에 취업진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취업부본부장, 진로부본부장, 취업진로본부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취업진로본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취업진로본부를 대표한다.<개정 2016. 5. 4., 2018. 7. 31., 2020. 8.14.. 2022.2.21.>
- ③ 부본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부재시 그 직 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 7. 31., 2020.8.14.>
- ④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7. 31.〉
- ⑤취업진로본부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를 두며, 필요할 경우 그 밖에 하부조직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9.14., 2020.8.14., 202 1.11.29., 2022.2.21.>
- 제4조(업무) 취업진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5.
 - 4., 2020.8.14., 2022.2.21.>
 - 1. 학생경력 및 인성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2. 학생생활 및 경력개발에 대한 각종 조사, 자료 분석 및 연구 활동
 - 3. 학생경력 및 인성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 교육, 홍보, 자료 및 정보 제공
 - 4. 학생경력개발을 위한 취업관련 행사지원 및 스터디활동 지원
 - 5. 취업률 통계조사·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 6. 〈삭제 2020.8.14.〉
 - 7. 〈삭제 2017.9.14.〉
 - 8. 그 밖에 학생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내부·외부 사업 운영 <개정 2017.9.14.>
 - 9. SeoulTech인재원의 학생선발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9.20.>
 - 10.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신설 2017.9.14.>
 - 11. 〈삭제 2021.11.29.〉
 - 12. 학생 진로 관련 검사 실시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2.2.21.〉
- **제5조(취업진로본부 운영위원회 설치)** 취업진로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진로본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를 둔다.<개정 2016. 5. 4., 2020.8.14., 2022.2.21.>
-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취업진로본부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5. 4., 2020.8.14., 2022. 2.21.>
- 2. 취업진로본부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개정 2016. 5. 4., 2020.8.14., 2022. 2.21.>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9.14..>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본부장과 각 대학장 및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7. 31., 2020.8.14.〉
- 제8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취업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했한다.<개정 2018. 7. 31.. 2020.8.14.. 2022.2.21.>
-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취업진로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 5. 4., 2020.8.14., 2022.2.21.>
- **제12조(재정)** 취업진로본부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고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으로 운영한다.<개정 2015. 6. 5., 2016. 5. 4., 2020.8.14., 2022.2.21.>
-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67호, 2013.1.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15. 6. 5)

(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6호, 2022.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